

## 민간조사업 관리·감독 기관 선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Which Facilities will Assume Charge of Management for the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정일석\* · 박지영\*\*

#### <목 차>

I. 서론	IV. 관리·감독 기관 선정에 관한 논의
II. 각국의 민간조사업 관리·감독 기관	V. 민간조사업 관리·감독 기관
III. 법안별 주요내용	VI. 결론

#### <요 약>

국내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해 1999년 하순봉의원의 법안을 시작으로 하여 2005년 이상배, 최재천의원 그리고 2008년 이인기의원, 2009년 강성천의원이 각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학계의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제도 도입에 대한 전망은 매우 밝다. 다만 민간조사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민간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떤 기관에서 담당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계속하여 논의되고 있다.

민간조사업 관리·감독 기관을 어떤 기관으로 할 것인가는 향후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 성공적인 민간조사제도의 정착에 중요한 문제로 우리보다 앞서 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한 외국의 경우 민간조사업을 민간경비의 한 영역으로 인식하여 경찰 혹은 별도의 기관(혹은 위원회)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내 법안들에서는 경찰청과 법무부를 관리·감독기관으로 제안한 바 있으나 민간경비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의 일원화, 민간조사업무의 경찰활동과의 유사성 및 경찰업무의 민영화, 국내 민간경비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해서는 민간경비업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경찰청이 관리·감독으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며, 나아가 경찰청 산하에 독립적 기구로 '민간조사업 관리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한다.

주제어 : 민간조사, 민간경비, 민간조사업법안, 민간조사 관리·감독 기관, 경비업법

\* 경기지방경찰청/경감, 용인대학교 경호학 박사(제1저자).

\*\* 경기지방경찰청/경정,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공동저자).

## I. 서 론

민간경비는 계속하여 영역이 확장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민간조사원에 의한 민간조사 서비스는 민간경비 치안서비스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Fischer, 1998 : 75), 보안 기능이 자신의 주된 업무는 아닐지라도 그것의 일환으로 이를 수행하는 보안역할이 자신의 원래 임무에 착근되어 있다는 점에서 민간경비의 가장자리로 인식되기도 한다(George and Button, 2000: 9).

민간조사제도는 공권력이 개입할 수 없는 곳에 수익자 부담주의 원칙에 의거 민간조사원에 사건 등을 의뢰하여 그 침해를 구제하며, 이를 향후 수사기관에 그 증거자료로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분명히 공경찰 활동의 간극을 메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조현빈, 2006: 275). 유럽의 경우 근대국가의 관료제가 갖는 정체성을 극복하고 시민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는 과정에서, 또한 영미식 형사재판제도의 본질적 형태인 당사자주의적 소송 구조에서는 시민의 권리가 사법 관료들에 의해 수동적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적극적인 소송활동을 통해야만 가능하다는 점이 민간조사업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된 이유 중 하나이다(황정익 등, 2005: 2).

하지만 우리나라는 민간조사업과 관련된 제도와 법규의 부재로 인해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이 민간조사원이 담당할 업무 중 일부를 실제 담당하면서 사생활 침해와 각종 불법행위 등을 유발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민간조사업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영향으로 1999년 하순봉 의원, 2005년 이상배, 최채천 의원이 각 대표 발의한 「민간조사법안」은 국회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법안폐기에 이르렀다(정일석, 2008: 212).

하지만 최근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가고 있으며,<sup>1)</sup>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던 단체들도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양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sup>2)</sup>

1) 민간조사제도의 유익성을 알아보기 위해 시민들을 상대로 한 최근 설문조사에서 '민간조사제도는 시민들의 안전에 도움을 주는 유익한 제도다'라는 질문에 Likert가 개발한 5점 척도 형식의 조사방법에 평균점이 3.3271로 시민들은 어느 정도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을 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최현락, 2008: 96-97).

2) 일례로 2007년 4월 16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공청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이정한 변호사는 기존 심부름센터에 의한 불법사생활 침해, 변호사 및 수사기관의 영역 침해, 정보의 편중 등을 이유로 제도 도입을 강력히 반대하였으나, 2009년 4월 10일 강성천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조사업법안 제3조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에서는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변호사로부터 의뢰받은 자료의 수집'으로 규정하고 있어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을 극구 반대하던 이전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민간경비학회, 한국경호경비학회, 대한민간조사학회 등 학계를 중심으로 하여 최근 몇 년 사이에 외국의 민간조사제도를 소개하거나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따른 민간조사원의 자격, 업무범위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5년 8월 국회의원 이상배, 유정복의 주최로 ‘민간조사업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처음으로 개최되었고 이후 2006년 이상배는 ‘민간조사제도 정착 및 수사기관과의 관계 정립에 관한 연구’라는 정책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2007년 3월에는 경찰청 주최로 ‘바람직한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동년 4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주관으로 ‘민간조사업법안에 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이후 2008년 9월 24일 이인기의원 등 10명이 경비업법개정안(이하 이인기 법안)을 발의하면서 동년 10월 31일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개최되었으며 가장 최근인 2009년 4월 10일에는 강성천의원 등 30명이 민간조사업법안(이하 강선천 법안)을 발의하는 등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여건은 어느 정도 무르익고 있다.

그러나 민간조사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최근 발의된 이인기 법안은 민간조사업을 경비업에 포함시켜 경비업법 개정안으로 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고, 강성천 법안은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별도의 민간조사업법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 입장의 차이일 뿐 내면적으로는 두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민간조사제도 도입 이후 관리·감독을 어떤 기관이 담당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이며, 두 번째는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와 관련된 것이다. 이 두가지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인식될 수 있으나 실상 법안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관리·감독기관의 주체가 어디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는 확연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발의된 이인기 법안과 강성천 법안을 중심으로 하여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따른 관리·감독기관 선정을 어떤 기관으로 할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보다 먼저 민간조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각국의 민간조사업 관리·감독 기관의 운영실태에 대한 살펴보고 향후 국내 민간조사제도 도입시 바람직한 관리·감독 기관의 선정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 II. 각국의 민간조사업 관리·감독 기관

### 1. 미 국

미국은 민간조사업과 민간조사원에 대해 연방정부에서 별도로 법규를 정하고 있지 않으며 50개 주(states)가 각각 자체적으로 법규와 관련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거나 혹은 관련 법규

가 없이 사업자허가(business license)만 받으면 영업을 허락하는 주도 있다. 현재 Alabama, Alaska, Colorado, Idaho, Mississippi, Missouri, South Dakota, Wyoming 8개 주는 주 차원의 민간조사업에 대한 법규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Missouri주의 경우 Kansas, St Louis, Joplin, St Joseph, Springfield 5개 지역은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며 Wyoming주 역시 지역별로 별도의 규정을 가지고 있다(정일석, 2008: 103).

미국의 경우 민간조사 뿐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 대해 관리·감독 혹은 규제가 필요한 부분에 위원회 혹은 부서(Bureau, Board, Department 등)를 만들어 규제와 관리를 하고 있다. <표 1> 미국 각 주별 민간조사 관리·감독기관을 보면 주정부 차원에서 민간조사관련 법규를 가지고 있는 42개 주 중에서 Connecticut, Delaware, Maine, Maryland, Massachusetts, New Hampshire, New Jersey 7개주는 주경찰에서 직접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나머지 주는 공공의 안전이나 면허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한 주의 경우 Arkansas, Georgia, Minnesota의 경우 위원회가 민간조사 뿐 아니라 민간경비 전반에 대해 관리하는 위원회이고, Indiana, Nevada와 같이 민간조사에 대해서만 별도로 관리하는 위원회도 있다.

위원회는 민간조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조사원 자격증 소개, 자격증 취득방법, 자격증 발급요금에 대해 안내하며 자격증 발급과 관련된 범죄경력 및 각종 요건 등에 대해 응시자로부터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응시자가 민간조사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를 한다. 아울러 자격증 소지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감시하여 위법행위 발생시 자격증을 박탈하거나 자격증 갱신을 제한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또한 주에 따라서는 자격증 발급에 따른 시험과 교육과정을 규정하고 있어 자격증 발급 시험과 교육과정을 관리하기도 한다. 그리고 민간조사원을 고용하려는 시민들이 자격증을 가진 민간조사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민간조사원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여 무자격 민간조사원에 의한 불법적인 민간조사업의 영위를 차단하는 역할도 수행하며 조사 의뢰와 관련하여 고객과 민간조사원 사이 분쟁 발생시 분쟁의 해결을 담당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표 1> 미국 각 주별 민간조사 관리·감독 기관

주(state)	관 리 · 감 독 기 관
Alabama	※ 규정없음
Alaska	※ 규정없음
Arizona	Dept. of Public Safety, Licensing Division
Arkansas	Arkansas Board of Private Investigators and Private Security Agencies

California	Licensing Division, Bureau of Security and Investigative Services
Colorado	※ 규정없음
Connecticut	Department of Public Safety, Division of State Police
Delaware	Detective Licensing, Delaware State Police
Florida	Florida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Consumer Services Division of Licensing
Georgia	State Board of Private Security Agencies
Hawaii	Board of Private detectives & Guards DCCA, PVL, Licensing Branch
Idaho	※ 규정없음
Illinois	Illinois Department of Financial & Professional Regulation
Indiana	Private Detective Licensing Board
Iowa	Administrative Services Division,
Kansas	Kansas Bureau of Investigation
Kentucky	Kentucky Private Investigators Licensing Board
Louisiana	Louisiana State Board of Private Investigators Examiners
Maine	State Police Licensing Division
Maryland	Maryland State Police, PI Licensing Division Jessup, MD
Massachusetts	Massachusetts State Police Special Licensing Unit
Michigan	Department of Consumer & Industry Services
Minnesota	Department of Public Safety Private Detective & Protective Agent Services Board
Mississippi	※ 규정없음
Missouri	※ 지역별 규정있음
Montana	Board of Private Security Patrol Officers and Investigators
Nebraska	Security of State
Nevada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Private Investigator's Licensing Board
New Hampshire	State Police Division of Licenses and Permits
New Jersey	State Police Department of Law & Public Safety Private Detective Unit
New Mexico	Bureau of Private Investigators
New York	Department of State Division of Licensing Services
North Carolina	Private Protective Services Board
North Dakota	Private Investigative & Security Board
Ohio	Ohio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epartment of Public Safety
Oklahoma	Council on Law Enforcement Education & Training Private Security Division
Oregon	Oregon Board of Investigators
Pennsylvania	※ 규정없음
Rhode Island	State of Rhode Island Providence Plantations
South Carolina	State Law Enforcement Division Regulatory Services
South Dakota	※ 규정없음
Tennessee	Department of Commerce & Insurance Private Protective Services Division
Texax	Texas Commission on Private Security
Utah	Department of Public Safety & Law Enforcement Services
Vermont	Board of Private Investigative and Armed Security Services
Virginia	Virginia 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Private Security Section
Washington	Department of Licensing, Public Protection Unit
West Virginia	Security of State Licensing Division Private Investigator Licensing
Wisconsin	Department of Regulation & Licensing
Wyoming	※ 지역별 규정있음

※ 출처 : 정일석, 2008 : 106.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Kentucky주의 경우 'Kentucky Private Investigators Licensing Board'는 7명의 위원들로 구성되는데 검사, 경감이상 경찰관, 보안관 각 1명과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민간조사원 3명, 민간조사업과 관련 없는 시민1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자격 요건은 주내(州內)에 거주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하고 있다. 위원들은 2년 임기로 선출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이들은 연2회 정기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 안전들에 대해 의결하며 기타 필요시 부정기회를 소집하여 긴급사항을 처리하고 있다.<sup>3)</sup>

## 2. 영 국

영국은 1950년대부터 민간조사업과 관련된 법규의 제정을 위해 민간조사협회를 중심으로 하여 꾸준한 로비활동이 이루어졌으며 그러한 활동이 1990년대 중반에 열매를 맺어 2001년 「Private Security Act 2001」이 제정되고, 민간조사업을 포함한 민간경비업 전반의 법규가 제정되었다. 동법은 경비업이나 민간조사업 등 민간의 보안서비스업에 대한 법률로서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민간조사와 관련하여서는 2006년 1월경 시행하게 되었다. 동법에 따라 민간조사를 포함한 민간경비업 전부를 SIA(Security Industry Authority)가 관리·감독하게 된다.

SIA는 민간경비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를 통해 범죄를 줄이고 질높은 민간경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3년 내무부 산하에 설립된 독립적 기구로 내무부의 감독을 받고 있으며 보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주된 업무는 면허발급과 면허관리 업무이며 경비업체의 경비업법 준수여부를 감독하고 민간경비원들의 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지는 않으나 민간경비원들의 교육 기준을 제시하거나 승인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sup>4)</sup> SIA는 기관장인(Chief Executive)아래 Service Delivery, Compliance and Enforcement, Strategy and Corporate Services 3개의 분과로 분리되어 각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각종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SIA 위원회는 내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sup>5)</sup>

3) An Act Relating to Private Investigators. Section 3. A New Section of K.R.S. Chapter 329A.

4) 2009년 현재 SIA는 영국의 모든 지역이 아닌 Englan, Wales, Scotland에 대해서만 경비업법에 의거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조만간 아직까지 경비업법이 적용되고 있지 않는 Northern Ireland에 대해서도 규제가 예정이다.

5) <http://www.the-sia.org.uk> 자료(2009. 8. 30.)

### 3. 프랑스

프랑스 민간조사업에 대한 최초 법규는 「Loi No.891 du 28 September 1942」에 의한 것이며 동법은 「Loi No.80-1058 du 22 Deceber 1980」에 의해 수정되었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법규명령인 「Decret No.81-1086 du December 1981」에 의해 민간조사업의 신고제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이후 2003년 3월 18일 「국내치안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정된 「안전확보를 위한 사적업무에 관한 법률」<sup>6)</sup>에 의거하여 기존 신고제 이던 민간조사업이 허가제로 변경되었다.

동법에 의해 민간조사업을 포함한 민간경비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은 내무성이다. 민간조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인가를 취득해야 하며 인가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국적이나 전과경력, 파산자 여부,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가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인가를 부여하고 있다. 특이하게도 자격제도에 관해서는 내무성이 관할하나 자격에 관련된 교육내용은 문무성이 관할하고 있다(根元好教, 2005: 125).

민간조사원 인가를 취득한 사람이 민간조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행한 지방장관, 법인의 경우에는 사무소소재한 지방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파리의 경우에는 지방장관이 아닌 경시총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실제 민간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경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찰은 관할 민간조사사무소에 대한 출입·감사 권한이 인정되고 있어 종업원 명부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환 또는 출입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4. 호 주

호주의 민간조사원에 대한 면허발급 등 관리·감독은 주에 따라 상이하나 대부분 주에서 경찰업무의 형태로 관리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표 2>의 내용과 같이 New South Wales, Victoria, Western Australia 에서는 주 경찰에서 자격심사에서부터 면허발급, 관리 등 민간조사업무 전반에 대해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Queensland, South Australia, Tasmania 는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소비자 보호 혹은 공정거래국에서 담당하고 있다(강영숙, 2006: 106).

각 주별로 세부적인 민간조사원 자격 요건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부분 연령(18세 이상), 범죄경력조회, 교육과정 이수 등의 비슷한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관리·감독기관에서는 위 요건에 부합한 신청자에게 자격증을 부여하고 자격의 연장, 취소 등

6) Loi No.83-629 du 12 Juillet 1983(안전확보를 위한 사적활동에 관한 법률)은 2003년 개정되었으며, 통상 프랑스 민간조사에 관한 법률은 '개정 1983법'으로 불리고 있다.

의 권한도 함께 가지고 있다.

<표 2> 호주 각 주별 민간조사업 관리·감독 기관

주(State)	관리·감독 기관
New South Wales	NSW Police Force
Queensland	Office of Fair Trading (QLD)
Victoria	Victorian Police
South Australia	Office of Consumer & Business Affairs
Western Australia	Western Australian Police Service
Tasmania	Consumer Affairs and Fair Trading
Northern Territory	Northern Territory Department of Justice

※ 출처 : www.investigateway.com 참조 구성 (2009. 8. 20.)

## 5. 일 본

일본은 2006년 6월 8일 「탐정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전까지 일본은 민간조사원에 대해 국가가 특별히 자격요건을 규정하거나 면허를 주지 않아 관할 관청에 신고만 하면 민간조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강영숙, 2006 : 90) 그러나, 흥신소 및 탐정업자들의 불법적인 개인정보조사, 개인정보유출, 불법도청 등이 만연하게 되면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게 되었고, 지금의 관련 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동법 제4조에 의하면 민간조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자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소마다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공안위원회(이하 공안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법 제13조에 의거 공안위원회는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민간조사업자에 대해 그 업무 상황에 관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 직원에게 민간조사업자의 영업소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또는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제16조에서는 도(道)공안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지역공안위원회에 위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국 실질적으로는 각 지역공안위원회의 실무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이 민간조사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6. 캐나다

연방국가인 캐나다는 연방차원의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 않다. 온타리오(Ontario)주의 경우 1996년 민간경비원 및 민간조사원에 관한 법률 「Private Investigators and Security Guards Act」를 제정하였으며 이후 개정 법률인 「Private Security and Investigative Service Act 2005」를 제정하여 2007년 8월 23일부터 시행중이다. 동법에 따른 민간조사업 관리·감독기관은 ‘Ministry of Community Safety and Correctional Service’(MCSCS, 공공안전·교정국)이다. MCSCS는 온타리오주의 재소자 교정업무와 민간경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민간조사원의 자격 부여, 등록, 갱신을 담당하고 있다.<sup>7)</sup> 민간조사원의 자격 요건으로 18세 이상일 것, 캐나다에서 취업할 수 있는 적격이 있을 것, 사면될 수 없는 범죄행위를 행하지 않았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매년 자격을 가진 자들에게 자격을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정일석, 2008: 162).

이상에서 살펴본 국가별 민간조사업 관리·감독 기관은 <표 3>과 같다.

<표 3> 국가별 민간조사업 관리·감독 기관

국 가	관리·감독 기관	비 고
미 국	경찰 혹은 별도 위원회	주별로 상이함
영 국	Security Industry Authority	내무부산하 독립기구
프 랑 스	지방행정관청(prefecture)	파리는 경찰
호 주	경찰 혹은 소비자보호, 공정거래국	주별로 상이함
일 본	도도부현 공안위원회	실제업무는 경찰에 위임
캐 나 다 (온타리오주)	Ministry of Community Safety and Correctional Service	공공안전·교정국

## III. 법안별 주요내용

민간조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으로 하순봉, 이상배 법안에서는 경찰청장으로 규정하였으며 최재천 법안에서는 법무부장관으로 규정한 사실이 있다. 또한 최근 발의된 이인기 법안에서는 경찰청장, 강성천 법안에서는 법무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내에서는 민간조사업 관리·감독기관에 대해 경찰청인지 법무부인지로 나뉘고 있는 양상이다. 여기서는 가장 최근에 발의된 이인기 법안(경비업법 개정안)과 강성천 법안(민간조사업법안)에 대해 살펴본다.

7) <http://www.mcscs.jus.gov.on.ca> (2009. 7. 25)

## 1. 이인기 법안(경비업법 개정안)

### 1) 제안이유

이인기 법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기존 법안들과는 달리 거시적인 관점에서 민간경비의 사회적 발전과정에 주목하여 민간조사 서비스를 민간경비 서비스의 한 영역으로 인식하면서 나날이 늘어가는 국민들의 사실조사 서비스 수요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sup>8)</sup>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민간조사와 관련된 별도의 법률을 제안하지 않고 경비업법의 개정을 통해 기존 경비업법에 규정된 민간경비 업무의 유형에 민간조사업 추가하는 방식으로 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 2) 업무의 범위

동 법안 제2조(정의)에서 민간조사업무란 ‘미아·가출인·실종자에 대해 가족의 의뢰에 의한 소재파악, 소재가 불명한 물건의 소재파악, 의뢰인의 피해확인 및 그 원인에 관한 사실 조사를 수행하는 업무’ 라고 정의하고 있다. 기존 법안들이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 법안에서 별도로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기존 경비업법의 제한된 틀에서 개정하다 보니 제2조(정의)에서 업무내용을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2조에서 열거된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가 제한적 열거인지, 예시적 열거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sup>9)</sup>

### 3) 관리·감독

한편, 동 법안에서는 민간조사업을 포함한 경비업의 감독 권한을 경찰청장에게 부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장의 구체적인 관리·감독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제2장에서는 제4조(경비업의 허가)에서 경비업(민간조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sup>10)</sup> 또한 제6조(허가의 유효기간)에서는

8) 이인기 법안 제안이유 ‘민간조사업이 발전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중략)...민간조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산업이 발전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민간조사업을 경비업의 한 분야로 보고 관련 규정을 기존의 경비업법에 추가하여 개정입법 하고자 함’

9) 기존의 다른 법안들에서는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하고 있고 그러한 열거들이 민간조사원이 담당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경비업법 개정안에서 별도로 업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별도로 업무의 범위를 일탈한 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볼때 제2조의 규정은 민간조사원이 담당할 수 있는 업무의 예시적 열거로 보아야 할 것이다.

10) 경비업법에서는 법인이 아니면 경비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조사업 역시 자연인이 아닌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5년이 만료되면 갱신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 4) 자격요건 및 의무사항

제5장에서는 민간조사원의 결격사유, 자격시험, 의무, 교육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자격시험은 경찰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시험의 과목, 방법,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자의 범위,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22조(민간조사원의 의무)에서 ①국가의 안보 및 기밀에 관한 사실, ②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구개발 사실, ③개인의 정치적 사상·종교적 신념 그 밖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실, ④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 2. 강성천 법안(민간조사업 법안)

### 1) 제안이유

강성천 법안의 제1조(목적)를 보면 ‘민간조사제도를 확립하여 민간조사업 종사자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업무수행의 적법성을 담보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sup>11)</sup>

### 2) 업무범위

동 법안 제3조(업무)에서는 민간조사원의 업무 범위를 ①미아, 가출인, 실종자, 소재 불명인 불법행위자에 대한 소재 파악과 관련된 조사, ②도난, 분실, 도피자산의 추적 및 소재 확인과 관련된 조사, ③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변호사로부터 의뢰받은 자료의 수집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존 법안들과는 달리 일반적인 사실조사의 경우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으로 제한함으로써 민간조사원의 주체적 활동을 제약하고 있으며, (문경환, 2009: 140) 이와 같은 내용대로라면 민간조사원은 변호사의 고용에 의해서만 활동되는 종속관계에 위치하게 된다.<sup>12)</sup>

법인의 형태로만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11) 기존 법안들이 대체적으로 민간조사제도의 확립에 목적을 두고 있는 반면 동 법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심부름센터의 불법 조사행위를 근절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조사업자들의 활동을 감시하며 민간조사원의 예상되는 권한 남용과 오용에 의한 불법행위시 기중처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민간조사원의 감시 및 처벌에 목적을 두고 있는 듯하다.

12) 이하 내용에 대해서는 4장에서 후술함.

### 3) 관리·감독

동 법안에서는 관리·감독기관 권한을 법무부장관에게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제 53조(권한의 위임)에서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민간조사업자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민간조사업의 관리·감독 권한을 법무부에서 가지고 있음에도 실무처리에 필요한 업무는 경찰서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관리·감독은 일선경찰서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sup>13)</sup>

### 4) 자격요건 및 의무사항

제1장에서는 제6조(민간조사원 자격시험)에서 민간조사원 자격시험은 법무부장관이 실시하며 제7조(민간조사원자격심의위원회)에서 민간조사원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민간조사원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경찰청장이 추천하는 자를 1인 이상 위원으로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다.<sup>14)</sup>

제2장에서는 제9조(등록)에서 민간조사원 자격이 있는 자가 민간조사를 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소를 설치하여 법무부에 등록하도록 하였으며, 법무부장관은 해당사유가 있을시 등록거부, 등록취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IV. 관리·감독 기관 선정에 관한 논의

민간조사원의 활동은 상대방에 대한 법익침해, 계약자인 의뢰인과의 서비스분쟁, 수사·사법기관과의 업무 중첩에 따른 공무집행 등의 가능성이 특히 높은 직업 영역이므로 민간조사제도 도입시 기존의 관련 법률인 변호사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형법 등과의 관계에서 상호 저촉되는 문제점들을 정비하여 민간

13) 이러한 형태는 민간경비업, 민간조사업과 관련하여 외국의 사례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더욱이 법무부에서 그 소속이 다른 행안부 산하의 경찰에게 권한의 일부 위임을 통해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하겠다는 것이다.

14) 동 법안의 발의 이전 정일석(2008)은 ‘민간조사원 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제안한 바 있으며, 제안 내용에 의하면 민간조사원 자격심의위원회는 경찰공무원, 민간조사업협회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으로 구성하되 ①경찰청장이 추천하는 경찰공무원 중 3명, ②민간조사업협회에서 추천하는 3명, ③다음 해당하는 자 중에서 민간조사업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5명(민간조사원 자격을 취득한 자, 대학교수 중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조사원이 활동할 수 있는 업무범위와 활동 영역을 제도상 보장해 주고, 정부 부처 간의 갈등을 줄여 민간조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명확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관리·감독 기관을 어떤 기관으로 선정하느냐는 결국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 국내 민간조사제도의 정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앞서 이인기 법안과 강성천 법안에서 언급된 관리·감독기관인 경찰청, 법무부 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경찰청 안(安)

하순봉, 이상배, 이인기 법안에서는 관리·감독 기관으로 경찰청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민간조사업이 경찰의 수사업무와 직접적 관련성이 많고, 민간조사업은 민간경비의 성장과정에서 민간경비의 한 영역으로 발전해 왔으며, 외국의 경우에도 민간경비 전반에 대한 관리영역에 민간조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그동안 민간경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였던 인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무난하게 민간조사업을 관리·감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존 민간경비업에 대한 관리·감독에 있어 경찰인력 부족, 전문성의 결여 등이 지적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 2. 법무부 안(安)

최재천, 강성천 법안에서는 법무부를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대표적인 자격으로는 변호사가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법무사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법무부가 관리·감독할 경우 현실적으로 민간조사제도 도입 이후 변호사법 등 기존 법률 등과의 충돌가능성에 대해 사전 조율이 용이하며, 법무부 산하 검찰청으로 그 권한을 위임하여 법집행기관에 의한 민간조사업의 적절한 통제가 용이하다는 장점은 있다. 반면 외국 사례에서 보듯이 법무부가 직접 민간조사업을 관리·감독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민간경비의 한 분야인 민간조사업을 법무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인력이나 조직운영 면에도 비효율적이고 무엇보다도 민간조사원의 변호사에 대한 종속관계가 심히 우려된다.

### 3. 관리·감독 기관 선정에 관한 논의

실제 이상배 법안에 대해 2007년 4월 16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민간조사업법 도입을 위한 공청회’에서 변호사협회를 대표하는 변호사는 민간조사제도 도입 자체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명한바 있다.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민간조사제도가 도입되면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국가 경영의 기본 원칙에 반하며, 새로운 직역을 창설함으로써 기존 직역과의 갈등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는 것이었다(민간조사업법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2007: 34-38). 하지만 2009년 발의된 강성천 법안에서는 민간조사원의 업무 범위에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변호사로부터 의뢰받은 자료의 수집’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하던 변호사협회의 입장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심각한 문제는 만일 강성천 법안의 내용과 같이 법무부가 민간조사업의 관리·감독기관이 되고 민간조사원의 업무 범위가 위와 같이 규정된다면 결국 실제 민간조사원은 변호사에 고용되어 활동되는 종속관계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외국의 사례에서도 그 유래를 볼 수 없는 것으로 기본적인 민간조사업의 국내 도입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저버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또한 강성천 법안 제3조에 의하면 민간조사원은 변호사로부터 의뢰받은 자료의 수집을 담당하게 되고, 제18조에 의하면 민간조사원은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 및 성공 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결국 민간조사원은 의뢰인이 아닌 변호사로부터 사건 의뢰를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 변호사로부터 보수를 받게 된다. 그리하여 민간조사원의 변호사에 대한 종속관계는 심화될 것이며 의뢰인은 민간조사원 활동에 따른 보수를 민간조사원에게 지급하지 아니라고 변호사에게 지급함으로써 의뢰비용이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2007년 12월에 시민 650명과 민간경비원 750명을 상대로 민간조사업 관리·감독기관의 선정에 대해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시민의 경우 53.97%가 민간조사업의 관리·감독기관으로 경찰청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민간경비원의 경우 59.19%가 경찰청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최현락, 2008: 96-97). 또한 국내 학계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경찰청이 관리·감독기관으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현실이다.<sup>15)</sup>

15) 민간조사업의 관리·감독기관으로 경찰청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논문을 통하여 제시한 주요 학자들의 논문 제목과 출처를 간단히 기재하면 아래와 같다.

- 이상원·이승철(2007) “민간조사업 법안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9호
- 장석현·송병호(2008) “민간조사업 도입상의 쟁점분석”,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3호
- 강영숙(2006) “한국의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용인대 박사논문
- 김원중(2006) “민간조사제도의 정착 및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호경비학회세미나자료
- 황정익(2006) “공인탐정제도의 사회적 필요성과 향후 발전과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8호
- 조현민(2006) “주요국가의 공인탐정 현황 및 정책점 시사점”,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8호
- 장석현(2008) “민간조사업의 도입모델에 관한 연구”, 동국대 박사논문
- 전대양(2006) “민간조사업 법안의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8호

## V. 민간조사업 관리·감독 기관

### 1. 소관부처의 선정

민간조사업은 서구사회에서 민간경비의 한 영역으로 성장하여 왔고 자리매김하고 있다. Fisher와 Green(1998: 79-83)은 특별한 개인이나 조직의 보호를 위해 보호서비스가 제공될 때 이를 민간경비 영역에 속하게 된다고 하면서 민간경비서비스의 영역에 민간조사원에 의한 민간조사서비스(investigative service)가 포함됨을 언급한 사실이 있으며, George와 Button(2000: 13)은 보안기능이 자신의 주된 업무는 아닐지라도 그것의 일환으로 이를 수행하는 보안역할이 자신의 원래 임무에 착근(embedded)되어 있다는 점에서 민간경비의 가장자리로 민간조사를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국내 민간조사제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후 민간조사업은 민간경비의 분야로 인식되지 못하고 민간경비와는 다른 형태로 인식되어져 왔다. 이는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기존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예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시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지 심부름센터에 의한 사생활침해와 각종 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에 치우치다 보면 민간조사업의 생성과 발전과정에 대한 고찰을 간과하게 되어 민간조사업과 민간경비를 분리하여 인식하게 된다.

앞서 살펴본 각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외국의 경우 민간조사업은 민간경비의 한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그러한 이유로 민간조사업 규제에 관한 법규를 대부분 민간경비를 규제하는 법률에 같이 규정하면서 민간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은 당연히 같은 기관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표 4>를 보면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등 국내 주요 자격제도의 경우 자격증 소지자가 관여하는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기관에서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주요 자격별 관리·감독 기관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경비지도사
법무부	대법원	특허청	관세청	기획재정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경찰청

결국 국내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즈음하며 민간조사업에 대한 소관부처는 경찰청이 되어야 하며 경찰청이 소관부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경비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의 일원화를 위해서이다. 민간조사업은 민간경비업의 한 영역이고, 민간경비업을 현재 경찰청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음에도 민간조사업만을

법무부에서 담당하게 된다면 민간경비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원화 되고 이로 인해 향후 업무적 충돌이나 혼선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경찰활동과의 유사성 및 경찰업무의 민영화를 위해서이다. 민간조사원의 업무는 경찰활동과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 업무의 유사성으로 인해 업무의 충돌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지만 실제 민간조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오히려 업무의 유사성으로 인해 경찰활동과 경쟁 또는 협력의 관계에 있다. 또한 최근의 추세인 ‘공공부문의 재화·서비스 공급의 민간화’이라는 경찰업무의 민영화에도 부합하는 결과이다.<sup>16)</sup>

셋째, 국내 민간경비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해서이다. 삼성경제연구소에 의하면 2008년 국내 민간경비시장은 약1조4,000억원 상당이며 향후 5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조사업의 등장은 기존의 민간경비업과 맞물려 민간경비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현재까지 민간경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왔던 경찰청이 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민간경비산업 발전을 위해 민간조사업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2. 위원회 제도 도입

개정 경비업법안에 의하면 민간조사업이 민간경비업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고 이에 민간경비업을 관리·감독하는 경찰청이 민간조사업도 관리·감독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향후 민간조사업을 포함한 국내 민간경비산업 전반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기구의 설치를 고려해 볼만하다.

앞서 외국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미국의 경우 주경찰이 담당하는 주 외에는 대부분 독자적인 위원회형태의 기구를 설치하여 민간경비업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도 「Private Security Act 2001」의 시행 이후 SIA라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민간경비산업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도 실제 규제 업무는 경찰에서 담당하나 중요한 결정사항 등에 대해서는 공안위원회에서 담당하는 등 독립적인 위원회나 기구의 형태로 민간경비업을 관리·감독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재까지 발의되었던 국내 법률안에서는 민간조사업을 관리·감독할 독립적인 기구나 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한 적이 없었다. 이에 민간조사업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로 ‘민간조사업 관리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하여 본다.

‘민간조사업 관리위원회’는 민간조사원에 대한 자격심사, 등록과 취소, 징계 등 민간조사업

16) 미국의 경우 경찰업무의 민영화라는 관점에서 민간경비와 민간조사는 민간인이 주체가 되어 일정한 대가를 받고 범죄예방서비스나 범죄정보를 수집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영업이므로 동일한 사무실에서 겸업하는 경우도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장석현·송병호, 2008: 338).



전반에 대해 관리·감독하면서 중요 안전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되 경찰청 소속으로 하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하여 민간조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심의·의결 및 민간조사원 자격심사·징계 등은 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고, 민간조사원과 민간조사업체에 대한 관리 및 지도는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민간조사업 관리위원회에는 민간조사원 자격심사를 담당할 ‘자격심의위원회’와 징계를 담당할 ‘징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각 위원회 별로 별도의 위원을 구성하면 좋을 것이다.<sup>17)</sup>

‘민간조사업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11명 정도로 구성하되 경찰청장이 추천하는 자, 민간조사업(민간경비업)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관련분야 교수, 시민단체회원 등으로 구성하여 외부전문성을 보장하고 공신력이 확보 될 수 있어야 한다. 조직기구상 경찰청 소속으로 하되 경찰청장과는 별도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성이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민간조사업 관리위원회와 같은 성격의 민간경비업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아래 민간조사업을 포함한 각 분과별 위원회를 두어 국내 민간경비산업 전반에 대해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것이며 영국의 SIA를 그 모델로 삼는다면 좋을 것이다.

## VI. 결 론

최근 국내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학계의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관련 법규에 대한 다양한 법안이 제안되고 있어 국내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관한 문제는 도입여부에 대한 찬반 논란의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민간조사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와 민간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떤 기관에서 담당할 것인가가 현재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민간조사업의 관리·감독 기관 선정은 향후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 성공적인 민간조사제도의 조기 정착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보다 앞서 민간조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 민간조사업은 민간경비산업의 일부로 일찍이 자리매김을 하여왔으며 민간조사원의 자

17) 위원회 제도의 장점은 첫째,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과 공무원과의 상호의사전달 기능을 증진하며 둘째, 합리적 정책결정과 이로 인한 정책적 능률성을 제공 할 수 있어 외부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고 셋째, 정부내부에서 이미 개발된 아이디어나 결정에 대해 외부전문가를 통한 지지나 정당성 제공의 역할을 수행한다(이상원·이승철, 2007: 23 재인용).

격발급과 관리에 대해 경찰 혹은 별도의 기관(혹은 위원회)을 설치하여 관리하여 왔다.

이에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즈음하며 민간조사업의 관리·감독을 담당할 정부 부처로 경찰청을 제안하며 경찰청이 소관부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민간경비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의 일원화, 경찰활동과의 유사성 및 경찰업무의 민영화, 국내 민간경비산업의 발전 및 육성 등이다. 더 나아가 경찰청 소속으로 독립적인 ‘민간조사업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조사업에 관한 중요사안 심의 등을 담당하게 하고, 실질적인 관리 업무는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에게 재위임하도록 한다면 체계적인 민간조사업의 관리·감독이 이루어 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간조사업 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면서 영국의 SIA를 모델로 설정, 민간조사업을 포함한 민간경비산업 전반에 관한 관리·감독 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한다면 국내 민간경비산업과 민간조사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이에 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 참 고 문 헌

### 1. 국내문헌

- 강영숙(2006). “한국의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 김상균(2007).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와 타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7.
- 문경환(2009). “개정 경비업법(안)상 민간조사관의 업무범위 및 한계 연구”, 『경찰법연구』, 9.
- 이동영(2000). 『21세기, 공인탐정이 뿔다』, 서울: 굿인포메이션.
- 이상원·이승철(2007). “민간조사업 법안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9.
- 손상철(2005). 『민간조사학 개론』, 서울: 백산출판사.
- 장석현·송병호(2008). “민간조사업 도입상의 쟁점분석”,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3.
- 전대양(2007). “일본 탐정업법의 제정배경과 주용 내용 및 정책적 함의”,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9.
- 정일석(2008). “민간경비 영역확장을 위한 민간조사제도 도입 방안”, 「박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 조현빈(2006). “주요국가의 공인탐정 현황 및 정책점 시사점”, 『한국민간경비학회보』, 8.
- 최현락(2008). 「민간조사업의 도입모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황정익·김윤철·백창현(2005). 『공인조사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경기: 치안정책연구소.

### 2. 외국문헌

- Cliff, Roberson and Michael, L. Birzer(2008). 『Introduction to Private Security』. Pearson Education.
- Fisher, Robert J. and Green, Gion(1998). 『Introduction to Security』 Boston: Butterworth-Heinemann.
- George, Bruce and Button, Mark(2000). 『Private Security』. England: Perpetuity Press.
- 根元好教(2005). 『諸外國における探偵業の實態調査』. 社會安全研究財團.

### 3. 기 타

-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공청회 자료집(2008. 10. 31)
- 민간조사업법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국회행정차지위원회, 2007. 4. 16.)
- <http://www.the-sia.org.uk>
- <http://www.investigateway.com>
- <http://www.mcscs.jus.gov.on.ca>

Abstract

**A Study on the Which Facilities will Assume Charge of Management for the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Jung, Il-Seok · Park, Ji-Yong

For the introduction of domestic private investigation act, with beginning of private investigation act bill by Ha Soon-bong in 1999, congressmen Choi Jae-chun, Lee Sang-bae, in 2005, Lee In-gi in 2008, and Kang Sung-chun in 2009 initiate the each bill, and many researches and studies in the academia about the private investigation act bill makes have a bright prospect toward to the bill. However, up to the present, there is a debating which services will charge for management for the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It is important that which facilities will assume charge of management for the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because this is a cornerstone to set up a successful investigation act which fulfills a nation's needs in the future. According to the other countries which induced the act earlier, they, by perceiving the act as a part of the private security, manage the act by setting the police or the separate services such as committees.

In municipal laws, there was a case suggesting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Justice Department as the facilities for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however, for the unification of administration for the whole private security, similarities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and police service, privacy of police services, and development for the domestic private security business, the national police agency, taking care of the private security business, should be assigned as the department for management and supervision, additionally, suggestion to establish "The Management Committee for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as a separate facility under the national police agency is needed.

Key Word : Private Security, Private Investigation, Act Bill for Private Investigation, Charge of Management for the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Act for Private Security.